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99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8. 12.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616,642,000원 및 지방교육세 389,846,250원의 부과처분[1]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2014. 9. 15. 함께 이루어진 ① 2009년 7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241,657,000원 및 지방교육세 153,461,480원의, ② 2009년 8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249,990,000원 및 지방교육세 157,887,910원의, ③ 2009년 9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124,995,000원 및 지방교육세 78,49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라고 한다)로부터 외항선 선원 및 국제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용도로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외항선 선원 등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09. 7. 21.부터 2009. 9. 4.까지 [redacted]로부터 국제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용도 명목으로 공급된 담배 중 740,000갑(이하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① 2009년 7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241,657,000원 및 지방교육세 153,461,480원의, ② 2009년 8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249,990,000원 및 지방교육세 157,887,910원의, ③ 2009년 9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124,995,000원 및 지방교육세 78,49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담배의 제조자인 [redacted]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수출을 권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수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공급하였다. 결국 [redacted]가 이 사건 담배의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이 사건 담배의 용도 외 처분으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redacted] 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담배소비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마지막으로 수출한 2009. 9.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9.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 라.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제조자 케이티엔지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수출 용도로 공급받아 실제로 수출을 하였고, 그 수출신고 역시 제조자를 케이티엔지로 하였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케이티엔지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점,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뿐만 아니라 '수출 용도' 역시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이 정한 면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 ②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이고(구 지방세법 제22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25조는 '제조자는 제조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항),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③ 담배소비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1항에서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한편 구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자의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제조자가 면세 대상이 아닌 용도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반출한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이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자의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인 점, 구 지방세법이 반출한 면세담배를 당해 용도가 아닌 용도로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해당 담배가 당초부터 면세 용도가 아닌 것으로 반출되었다면 과세대상인 해당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어 제조자가 납부하였어야 했던 담배소비세를 면세 대상 외 용도로의 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해당 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배가 당초부터 면세 대상이 아닌 용도로 반출되었을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반출한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009년 7월 반출된 담배(담배소비세 241,657,000원 및 지방교육세 153,461,480원)의 경우는 2009. 9. 1.부터, 2009년 8월 반출된 담배(담배소비세 249,990,000원 및 지방교육세 157,887,910원)의 경우는 2009. 10. 1.부터, 2009년 9월 반출된 담배(담배소비세 124,995,000원 및 지방교육세 78,496,860원)의 경우는 2009. 11. 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7월 반출된 담배에 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14. 9. 15.에야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7월 수출분에 대한 담배소비세 241,657,000원 및 지방교육세 153,461,480원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간주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25조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항),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 판매 ·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수출'(제1호),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2) 위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상 면세담배 반출 이후 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비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조자가 면세담배를 반출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제조자가 관여하여 면세담배의 처분주체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까지만 한 제조자에게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도 외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반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었던 이 사건 담배가 반출된 이후 해당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원고와 제조자 [redacted] 사이의 거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는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가 아니라 '수출'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실제 수출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반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인 이상,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redacted]는 원고와 사전에 이 사건 담배를 수출용도로 사용한다는 의사연락 하에 원고에게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가 아니라 '수출' 용도로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redacted] B지점의 직원 C은 원고가 이 사건 면세담배를 수출할 당시 선용품업체에 면세담배를 공급하는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4. 10. 31. 원고에게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케이티엔지 B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원고 대표 D의 전화를 받고 보세용담배를 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하였으며 매월 판매실적 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 첨부하여 보고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C은 위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4. 11. 7.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추궁받게 되자, 원고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며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 내지는 백지화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추궁받던 과정에서 한 진술인데다가, 아래 (2)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선용품업체가 면세담배 판매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되고, C은 위 확인서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원고의 부탁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받고 편의를 보아주려고 사실과 다름에도 작성하여 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다는 C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C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수출신고필증 외에도 여러 가지 적재확인서 등을 한꺼번에 보내와서 그대로 보관하다가 [redacted]본사 회계재무실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은 부동문자로 질문이 기재된 문답서에 '판매현황 집계표만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C의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본사 재무회계실로 보냈다'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위 문답서의 기재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케이티엔지 영업관리실 E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수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사건 담배의 수출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C의 위와 같이 구체적 내용의 진술과 배치되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dacted]는 원고와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고로 하여금 판매실적 등 통보는 물론 수출에 관한 관세환급서류 제공도 하도록 약정한 바도 있었으므로, E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C의 위 진술 중 제공받은 수출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당시 수출용으로 포장되어 제조된 담배를 취급하지 않은 케이티엔지 B지점에서 외항선 선원 및 국제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용도의 면세담배 업무를 전담하는 C이 수출신고필증이 함께 제출된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redacted] 본사로 보냈다는 것이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3) 원고와 [redacted] B지점장 사이에 2007. 12. 1. 체결된 특수용담배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redacted]에게 담배인수 예정일 20일전까지 담배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여객선 승객 및 외항선 선원에 대하여 판매한 사실을 세관장이 발행하는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매월 10일전까지 전월 판매실적 및 재고상황을 [redacted]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나아가 [redacted]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redacted]에게 물품반입확인신청(확인)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 또한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사전에 담배공급 신청서를, 사후에 판매실적 및 재고상황이나 기타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redacted] 측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담배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관세환급신청인을 제조자인 [redacted]로 기재하였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기 수년 전인 2005. 2.부터 이 사건 담배의 수출이 이루어진 2009. 9.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redacted]로부터 외항선 선원 및 국제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용도로 특수용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여 왔다. 앞서와 같이 원고가 [redacted]에게 제출한 서류나 수출신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redacted]가 장기간 원고의 담배수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원고가 2009년에 수출한 이 사건 담배는, [redacted]가 2009년 원고에게 공급한 총 2,564,500갑의 담배 중 약 29%인 740,000갑 달하였는바, [redacted]의 담당직원이라면 그와 같은 양의 담배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으로 사전에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출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redacted]가 2009년 한 해 동안 수출용으로 반출한 담배는 5,114,000갑인데 반해 실제 관세청에 수출신고된 담배는 그 3배에 가까운 14,008,000갑에 달하고, [redacted] B지점에 한하여 보더라도 [redacted]는 2009년에 원고 외에도 [redacted] 주식회사에게 국제여객선 승객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 1,323,500갑을 반출하였는데, 같은 해 [redacted] 주식회사는 그 중 약 40%에 달하는 525,000갑의 담배를 수출신고하였다.

그와 같이 [redacted]가 반출한 담배의 양과 관세청에 수출신고된 담배의 양, 이후 [redacted]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redacted]로부터 반출받아 수출함에 있어 [redacted]와 원고 사이에 아무런 사전, 사후 연락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조자인 [redacted]가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로 반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담배를 원고에게 수출 용도로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담배의 반출용도는 반출신고 내용인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가 아니라 [redacted]가 원고에게 실제 제공한 용도인 '수출 용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수출 용도'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제조자 [redacted]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판매 용도'로 공급받고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달리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5조 제5항이 정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박용근

판사 황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224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225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2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제233조의6(신고 및 납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3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끝.